규제영향분석서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

<목 차>

1.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대상선박의 최고높이 신고 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해양경찰청	작성자	이름	김부영
	담당부서(과)	해상교통관제과		직급	해양수산주사보
	국장	여성수		연락처	032-835-2685
	과장	박성용		이메일	skyqndud@korea.kr

2026. 06. 25. 작성

정책책임자 직위 : 경비국장 성명 : 여성수

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
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대상선박의 최고높이 신고 기준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4조(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), 제7조(신고의 절차 및 방법)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제2호, 제14조(선장의 의무 등)제3항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강화</td><td>5.행정예고</td><td>2026.06.30~2026.07.1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규제의
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
및 정부개입
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○ (관제구역 확대) 동해 · 포항광역 해역 내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관제구역 확대
– 해경청은 전국 연안에서 연속적인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」에 따라 군산 · 목포('23), 제주('25), <u>동해 · 포항('26) 광역해역에 관제구역 확대 추진</u> 중
* 국정과제 76-3 '해양안전 · 감시장비 확충 등 스마트 관리역량 강화'

○ (선박높이 신고) 영종도–청라간 해상교량인 청라하늘대교 및 실리도–원전항 해월송전선(수정 배전선로)과 선박과의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에게 신고의무 부과
* '26.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, '26.2월 실리도 해월송전선–선박간 접촉사고
** 현재 전국 16개 교량, 4개 해월송전로 해역에서 선박통과시 관제센터에 신고 중이며, 이번 규제는 교량 개통 등으로 신설되는 규제임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○ (관제구역 확대)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관제구역을 기존 동해 · 포항항 인근 해역에서 양양–동해–울진(동해광역), 영덕–포항–경주(포항광역) 해역까지 확대
<table><tr><th>동해광역</th><th>포항광역</th></tr><tr><td>양양-동해-울진에 이르는 해역
* (확대면적) 약 1,200→약 2,900㎢</td><td>영덕-포항-경주에 이르는 해역
* (확대면적) 약 1,020→ 약 2,400㎢</td></tr><tr><td>
</td><td>
</td></tr></table>○ (선박높이 신고) 청라하늘대교 및 실리도–원전항 해월송전선(수정 배전선로)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가 해경청장이 고시한 높이*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자선의 높이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
* 청라하늘대교는 높이 37미터 이상 선박, 수정 배전선로는 높이 25미터 이상 선박이 신고 대상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</td><td>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○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</td></tr>
<tr><td>9.규제목표</td><td colspan="3">○ 동해 · 포항해역 및 해상교량 · 전선로 해역 운항선박 안전 확보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규제의 적정성</td><td rowspan="2">10.영향평가 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1.비용편익 분석
(정성분석)</td><td colspan="3">○ 확대되는 동해 · 포항광역 관제구역 및 해상교량 · 해월송전선 해역에서 선장의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 등의 편익이 더 큼</td></tr>
<tr><td rowspan="13">기타</td><td rowspan="12">12.규제일몰제</td><td colspan="3"><table>
<tr><th>대분류</th><th colspan="2">소분류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일몰설정 예외기준</td><td>1.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</td><td>미해당</td></tr>
<tr><td>2.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·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</td><td>해당</td></tr>
<tr><td>3.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</td><td>해당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경제규제 여부기준</td><td>4.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</td><td>미해당</td></tr>
<tr><td>5.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</td><td>미해당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일몰설정 세부기준</td><td>6.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</td><td>미해당</td></tr>
<tr><td>7.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</td><td>미해당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h>일몰설정여부</th><th>일몰조문</th><th>연장여부</th></tr>
<tr><td>–</td><td>–</td><td>–</td></tr>
<tr><th>일몰유형</th><th>일몰설정기간</th><th>일몰주기</th></tr>
<tr><td>–</td><td>–</td><td>–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13.우선허용 · 사후 규제 적용여부</td><td colspan="3">없음</td></tr>
</table>

<조문 대비표>

현 행

[별표1]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의 제원(제4조 관련)

관서	구역명	경위도 좌표(WGS-84) 및 구역도	관제통신 채널 (호출부호)
동해항 해상 교통 관제 센터	동해항 구역	ㅇ 동해항 및 인근해역 1. 북 위 37 도 46 분 23 초 동경128도..(후략)	12 (동해 브이티에스)
		ㅇ 호산항 및 인근 해역 1. 북 위 37 도 15 분 00 초 동경129도..(후략)	14 (호산 브이티에스)
포항항 해상 교통 관제 센터	포항항 구역	ㅇ 포항항 및 인근 해역 1. 북 위 36 도 07 분 16 초 동경129도..(후략)	12 (포항 브이티에스)
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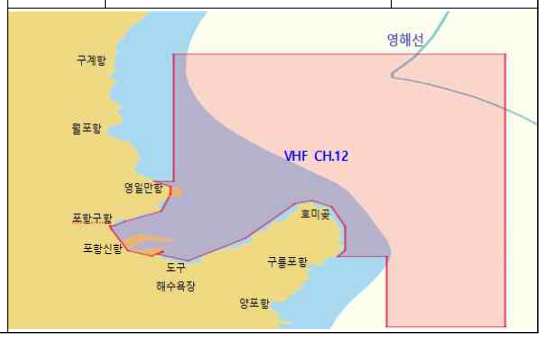		

개 정 안

[별표1]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의 제원(제4조 관련)

관서	구역명	경위도 좌표(WGS-84) 및 구역도	관제통신 채널 (호출부호)
동해 광역 해상 교통 관제 센터	동해 광역 구역	ㅇ 동호해변에서 사천진항에 이르는 해역 1. 북 위 38 도 02 분 55 초 동경128도..(후략)	14 (속초 브이티에스)
		ㅇ 사천진항에서 덕산항에 이르는 해역 1. 북 위 37 도 50 분 19 초 동경128도..(후략)	12 (동해 브이티에스)
		ㅇ 덕산항에서 울진항에 이르는 해역 1. 북 위 37 도 22 분 49 초 동경129도..(후략)	14 (호산 브이티에스)
포항 광역 해상 교통 관제 센터	포항 광역 구역	ㅇ 백석항에서 구계항에 이르는 해역 1. 북 위 36 도 37 분 18 초 동경129도..(후략)	10 (포항 브이티에스)
		ㅇ 구계항에서 양포항에 이르는 해역 1. 북 위 36 도 19 분 11 초 동경129도..(후략)	12 (포항 브이티에스)
		ㅇ 양포항에서 지경항에 이르는 해역 1. 북 위 35 도 53 분 32 초 동경129도..(후략)	10 (포항 브이티에스)
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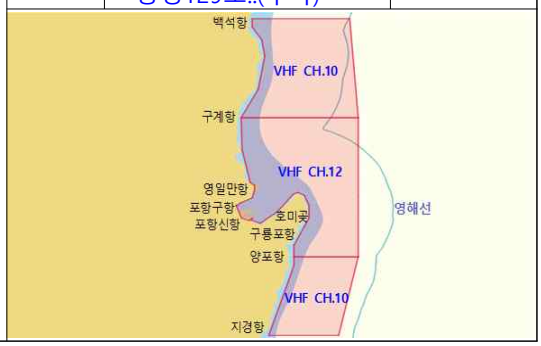		

현 행

[별표2] 관제대상선박 신고 절차·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2. 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

구 역	구 분		수면상 최고 높이(m)
군산 광역	동백대교		15
목포 광역	목포대교		45
	진도대교		**15**
평택·당진항	서해대교	주경간	62
		주경간 이외	45
인천항	인천대교		50
	영흥대교		18
	154kV 송현-포스코 CC 송전선로 (북항 관공선부두-북항 5부두 구간)		52
	345kV 신시흥-영흥 송전선로 (영흥도-선재도 구간)		24
경인항	영종대교		30
	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		15
여수·광양항	이순신대교		60
	묘도대교		40
울산항	울산대교		55
	154kV 신울산-영남 송전선로 (매암부두-장생포 호안 구간)		40
부산항	부산항대교		60
마산항	마창대교		60
	거가대교	거제-저도 구간	32
		저도-중죽도 구간	47
	가조연륙교		18
통영연안	연화도-우도 보도교		20
	22.9kV 산양 배전선로 (욕지도-하노대도 구간)		23

※ 비고

1.“수면상 최고 높이”란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

2. 관제구역별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

개 정 안

[별표2] 관제대상선박 신고 절차·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2. 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

구 역	구 분		수면상 최고 높이(m)
군산 광역	동백대교		15
목포 광역	목포대교		45
	진도대교		**15**
평택·당진항	서해대교	주경간	62
		주경간 이외	45
인천항	인천대교		50
	영흥대교		18
	154kV 송현-포스코 CC 송전선로 (북항 관공선부두-북항 5부두 구간)		52
	345kV 신시흥-영흥 송전선로 (영흥도-선재도 구간)		24
경인항	영종대교		30
	청라하늘대교		37
	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		15
여수·광양항	이순신대교		60
	묘도대교		40
울산항	울산대교		55
	154kV 신울산-영남 송전선로 (매암부두-장생포 호안 구간)		40
부산항	부산항대교		60
마산항	마창대교		60
	거가대교	거제-저도 구간	32
		저도-중죽도 구간	47
	가조연륙교		18
	22.9kV 수정 배전선로 (실리도-원전 구간)		25
통영연안	연화도-우도 보도교		20
	22.9kV 산양 배전선로 (욕지도-하노대도 구간)		23

※ 비고

1.“수면상 최고 높이”란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

2. 관제구역별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

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동해·포항광역 관제구역 확대

○ 선박교통관제란, 선박안전 및 해양시설 보호 등을 위해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**해경의 사무**(선박교통관제법 제2조, 제11조)로써,

○ 해경은 전국 연안에서의 연속적인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·목포('23), 제주('25) 및 **동해·포항('26) 광역 관제구역 확대** 추진 중

* (관련근거) ┌ 제1차('21~'25)·제2차('26~'30)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
└ 국정과제 76-3 '해양안전·감시장비 확충 등 스마트 관리역량 강화'

○ 관제구역을 기존 **동해·포항항 인근 해역에서 주변 연안해역까지 확대**함으로써 동해권 **관제공백 해소** 및 국가 **사고예방 기능 강화**

< 전국 관제구역 현황 및 동해·포항광역 관제구역 확대 계획 >

전국 관제구역 현황	동해광역 관제구역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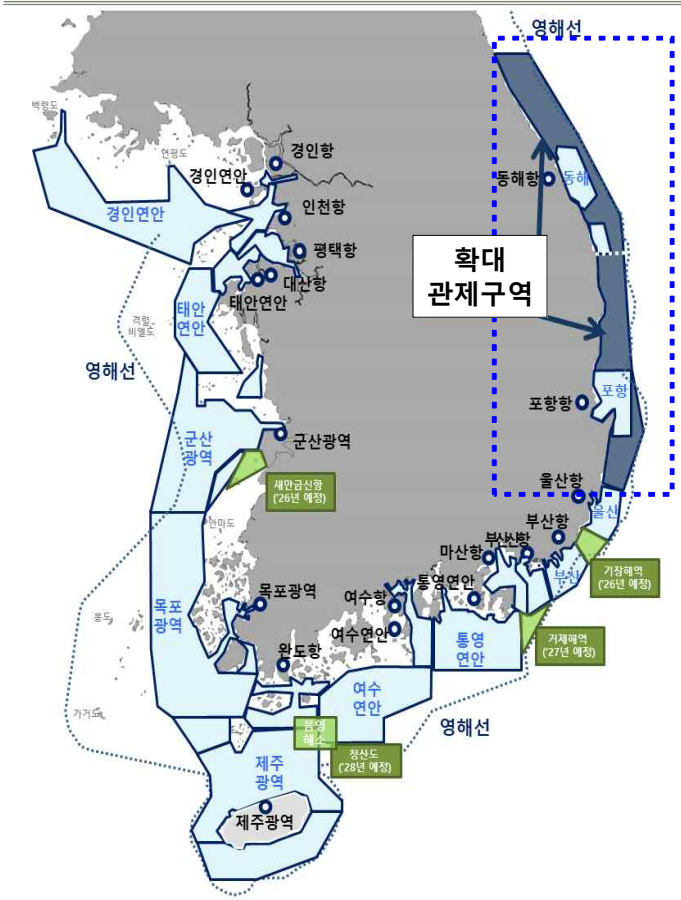	양양-동해-울진에 이르는 해역 * 약 1,200→ 약 2,905㎢(**142%↑**)
	포항광역 관제구역
	영덕-포항-경주에 이르는 해역 * 약 1,027→ 약 2,480㎢(**141%↑**)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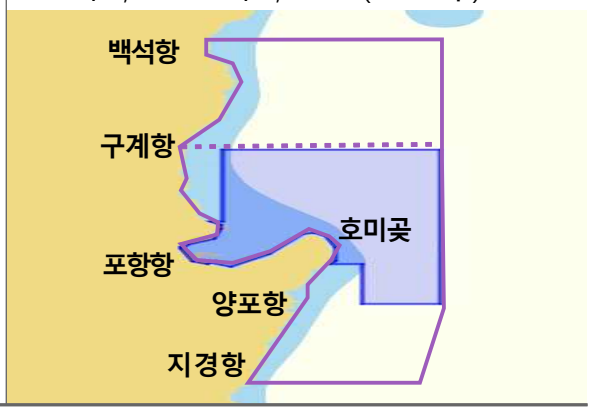

□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

○ 최근 국내외 **해상교량과 선박간 접촉사고***를 계기로 선박과 해상 구조물(교량, 송전선)간 **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** 필요

* '24.2.8. 해상크레인-거가대교, '26.2.23. 해상크레인-실리도 송전선(수정 배전선로) 접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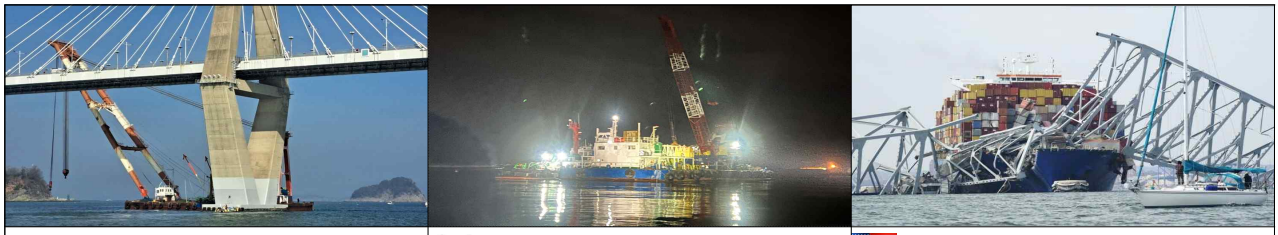

해상크레인-거가대교 충돌('24.2.8) | 해상크레인-송전선 접촉('26.2.23) | 화물선-볼티모어 교량 충돌('24.3.26)

○ 해상교량 · 송전선이 파손될 경우 **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**가 우려되므로 **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개입** 필요

* (美 볼티모어 교량 충돌) 인명부상 2명, 사망 6명, 경제최대 5조4천억원 피해

** (韓 실리도 송전선 접촉) 송전선 절단으로 55가구, 112명 정전 피해

○ **현행 규정**은 **16개 해상교량, 4개 송전선** 해역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자선의 **수면상 최고높이**를 **관제센터에 신고하도록 규제 중**

○ **신규개통한 청라하늘대교** 및 선박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**실리도 해월송전선(수정 배전선로)** 해역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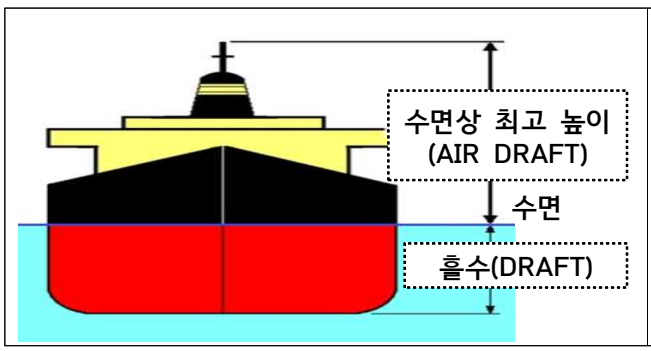

○ **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(AIR DRAFT)***
해상교량 등 구조물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로써, 운항자는 반드시 자선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숙지해야 함

* AIR DRAFT : 수면 상에서 선박의 최상층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
(선박항해용어사전 / 공길영 편저, 한국해양대)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현행유지안	대안명	- 동해·포항 관제구역 및 선박의 높이 신고기준 현행 유지
	내용	- 동해 · 포항 관제구역 현행 유지 - 해상교량 · 송전선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현행 유지

규제대안	대안명	- 동해·포항 관제구역 **확대** 및 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 통과 선박의 높이 **신고 의무 추가**
	내용	- 동해·포항광역 **관제구역 확대** - 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 통과 전 선박이 **수면상 최고높이 신고** * (현재) 전국 16개 교량 · 4개 전선로 선박 통과시 신고→ (변경) 17개 교량 · 5개 전선로로 2개소 추가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현행 유지안	동해·포항 관제구역 및 해상교량 등 통과신고 의무가 현행대로 유지되어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의무(관제지시 준수, 신고 등) 부담증가 없음	동해·포항 광역해역 관제 불가 및 해상교량 등 통과선박 높이 확인이 어려워져 동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위험 우려
규제대안	동해·포항 광역해역 및 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 해역 통항선박 안전확보	확대된 관제구역, 해상교량 등 해역에서 선장의 관제지시 준수, 신고의무 강화로 수범자 부담 증가

○ 대안의 선택 및 근거 : **규제대안 선택**

- 관제구역을 기존 동해·포항항 인근 해역에서 주변 연안해역까지 확대함으로써 **동해권 관제구역에 연속적인 관제서비스를 제공**하고,
- 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해역에서 **해상구조물과 선박의 접촉사고 예방 등** 을 위해 규제대안이 적합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일시 · 장소 · 방법	제시의견
동해항도선사지회, 선사·대리점, 예선업체	현장 간담회(**동해광역VTS**/'26.4.15/4.29) - 동해 확대 관제구역 및 통신채널 등	이견 없음
포항항도선사지회, 선사·대리점	현장 간담회(**포항광역VTS**/'26.4.15/5.20) - 포항 확대 관제구역 및 통신채널 등	이견 없음
한국도선사협회, 한국선장포럼, 한국해운협회, 한국해기사협회, 한국예선업협동조합	서면 의견조회('26.6.15 ~ 6.25) - 동해·포항 확대 관제구역 및 통신채널 등 - 해상교량·해월송전선 최고높이 신고 기준	이견 없음

3. 규제목표

○ 동해·포항해역 관제구역 확대 및 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와 선박과의 접촉사고 예방을 통한 해양안전 확보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○ 동해·포항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하면서 규제 범위가 증가했지만, 보다 **넓은 구역에서 관제서비스 제공**을 통한 **선박안전 확보** 가능

* 관제구역 확대면적 : (현재) 약 2,200㎢ → (확대) 약 5,400㎢

○ 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와 **접촉 우려가 있는 일정 높이 이상 선박의 선장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**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목적 달성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**영향평가**

- **기술규제영향평가, 경쟁영향평가, 중기영향평가 :** 해당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**최고높이 신고 해외사례**

- **(호 주)** 브리즈번항 교량 또는 송전선 통과하려는 일정 높이 이상 선박은 항만당국 또는 선박교통관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

* Port Procedures and Information for Shipping-Brisbane, October 2024. 인용

- **(캐나다)** 밴쿠버항 First Narrows Lions Gate Bridge 통과 시 일정 높이 초과 선박은 통항 24시간 전 항만당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

* Port Information Guide,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, February 2025 인용

- **(미 국)** 뉴욕항은 선박이 교량 통과시 2ft(약 61cm) 여유를 두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

  * USCG, Vessel Traffic Service New York User's Manual, January 2023 인용

o **선박교통관제구역 확대 사례**

- 기존 군산·목포·제주항 관제구역을 군산·목포·제주광역 관제구역으로 확대 * '23. 9. 1. 군산·목포광역, '25.6.21. 제주광역 관제구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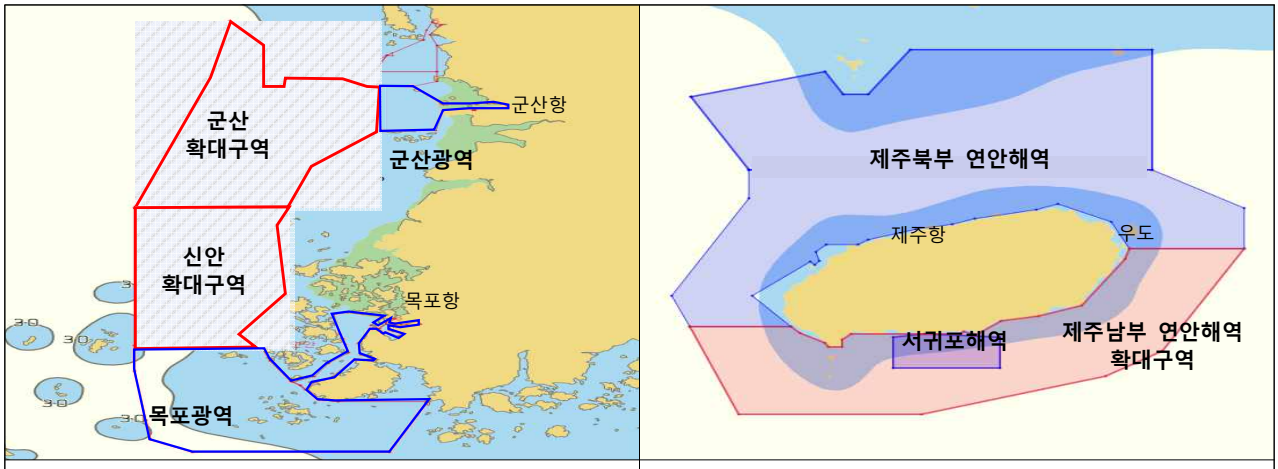

군산·목포광역 관제구역 확대	제주광역 관제구역 확대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o **피규제자 준수 가능성**

- 기존 동해·포항 관제구역이 확대된 것으로써, 현재 **홍보 및 시범 운영**('26.5~9월) 중이며, 이용자 간담회 시 **이견 없었음**

- 현재 16개 교량, 4개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**수면상 최고높이를 신고하도록 규정**하고 있으며, **신규개통 교량, 접촉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송전선** 통과신고 의무를 추가한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

- 선장(피규제자)은 초단파무선전화(VHF)를 이용하여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**음성으로 신고**하기 때문에 **규제 준수 부담감이 크지 않음**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**행정적 집행가능성**

- 해경은 확대예정인 동해·포항광역 관제구역을 **시범운영**(‘26.5~9월) 중이며,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**관제인력 증원 배치 예정**

- 선박 높이신고 의무가 신설되는 청라하늘대교, 수정 배정선로 해역은 기존 **경인항·마산항 관제구역 내**이므로 신고접수 등 행정집행 가능

o **재정적 집행가능성 :** 별도의 재정집행이 필요하지 않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경과

o 행정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 수립 : ’26. 6. 15.

o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: ’26. 6. 15. ~ 6. 25.

2. 향후계획

o 개정안 행정예고 : ’26. 6. 30. ~ 7. 10.

o 자체규제심사 및 국조실 규제 예비심사 : ’26. 7. ~ 8.

o 행정규칙 개정완료 및 시행 : ’26. 9. ~ 10.

3. 종합결론

o **동해·포항광역 관제구역 확대**를 통해 전국 연안해역에 **연속적인 관제 서비스 제공**함으로써 **선박교통 및 해양안전 향상** 기대

o 선박과 교량, 송전선 **접촉사고**로 인한 **막대한 피해 및 사회적 복구 비용** 등을 고려할 때 **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 통과선박에 대한 신고의무를 추가**하는 것은 **타당**하다고 판단됨

별 첨	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6	2026	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동해·포항광역 선박교통관제구역 확대 및 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 최고높이 신고 기준 추가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
○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함으로써, 확대되는 동해 · 포항 관제구역 및 해상교량 등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서 국가로부터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 등의 편익이 더 크다고 사료됨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동해·포항광역 선박교통관제구역 확대 및 청라하늘대교·수정 배전선로 최고높이 신고 기준 추가>

①피규제 일반국민 :

□비용

(정성)영향집단명	동해 · 포항광역 구역, 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수역을 통과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
활동제목	– 동해 · 포항 해역에서 항행 ·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명, 선박의 위치, 목적지 등을 신고 – 자선의 수면상 최고높이가 청라하늘대교 · 수정 배전선로의 신고 기준높이 이상인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
비용항목	운항자의 신고의무 구역 확대 및 신고사항 추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– 동해 · 포항광역 관제구역 확대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구역이 확대 – 청라하늘대교 · 수정 배전선로의 신고 기준높이 이상인 경우 신고내용에 최고높이를 추가

□편익

(정성)영향집단명	동해 · 포항광역 구역, 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수역을 통과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
활동제목	– 동해 · 포항 해역에서 항행 ·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명, 선박의 위치, 목적지 등을 신고 – 자선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청라하늘대교 · 수정 배전선로의 신고 기준높이 이상인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
편익항목	– 보다 넓은 구역에서 관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– 해상교량 및 전력선과 접촉사고 예방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– 관제서비스 제공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선박교통 안전에 기여 – 선장이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신고하고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확인함으로써 접촉사고 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

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:

□편익

(정성)영향집단명	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관리사
활동제목	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관리(유지, 보수)
편익항목	선박과 접촉사고 예방으로 인한 해상교량 및 해월송전선 보호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관제대상선박 선장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접촉사고 예방을 통해 해상교량 및 해월송전선 보호

③정부 :

□편익

(정성)영향집단명	항만, 교량(전선로), 선박교통 등을 관리하는 정부부처
활동제목	사회기반시설 및 선박교통 등 관리, 감독
편익항목	해양사고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선박간 충돌사고 및 해상구조물과의 접촉사고 예방으로 사회 전체적 편익 증대

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□편익

(정성)영향집단명	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전력을 이용하는 일반국민
활동제목	청라하늘대교 및 수정 배전선로 전력 이용
편익항목	교량, 전력 이용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사고 예방으로 교량 및 전력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국민 편의 확보